

회계환경 변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김보영**

〈요 약〉

본 연구는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의적 계정 분류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 보았다. 본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2011년 K-IFRS 도입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세부 분류에 대하여 재량성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더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도입되었고, 과세대상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 혹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익 발생 시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강화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시 모범사례가 발표되어 이러한 유인을 약화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증여의제 도입과 관계없이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였고,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대폭 감소,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대폭 증가했다. 반면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은 증가,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K-IFRS 도입 이후 감소하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증여의제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 실질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계정 분류가 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경우 회계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K-IFRS 도입 이후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다. 재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대상이 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을 다른 계정으로 분류할 유인이 높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하므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공시 모범사례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없을 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규제가 도입될 때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2927).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bykim0405@kilf.re.kr

본 연구는 회계환경이 변할 때, 특수관계자 매출의 의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 시 회계환경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특수관계자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K-IFRS 도입, 주식공시 모범사례, 재벌

I. 서 론

특수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개인이나 친족, 또는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 간의 거래를 말한다(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거래는 동등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거래와 달리,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최순재 등 201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시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는데, K-IFRS 도입 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하였고, 2011년 K-IFRS 도입 후에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K-IFRS 이전보다는 공시내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하여 기업들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부 분류에 대하여 재량성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 거래의 분류에 대하여 재량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도입되었다. 2011년에 신설되어 2012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¹⁾=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전체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이 영업이익²⁾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1) 앞으로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로 표기하겠다. 비교되는 개념은 논문 전체에 쓰이는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수익) 중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측정변수 SR)인데, 특수관계자 거래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수익 대비) 매출로 분류한 비율 개념이다.
- 2) 영업손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차감)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요건이 되기도 하며, 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기업들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낮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만우 등(2015)은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는 수혜법인의 경우 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도입 이후 유의하게 낮아지고, 이성태 등(2015)은 2011년 대비 2012년 수혜법인 개수와 증여세액, 그리고 내부거래비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증여의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계정 분류의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정책 목적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며 기업의 행태 변화가 정부정책 달성과는 무관한 외관상의 변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만우 등(2015)은 이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높았던 수혜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성태 등(2015)은 정부정책의 달성과는 무관하게 과세특례 등을 이용하여 내부거래비율만을 줄이는 방식을 이용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은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과 규정이 복잡하여 정책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시되기도 한다(최보람 2012).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매출 분류 재량성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수익 발생 시 매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한국회계기준원). 사업목적 부합 여부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량성이 존재한다.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매출로 분류하였던 항목을 기타수익³⁾(영업외수익 포함)으로 분류한다면 실질이 변하지 않아 전체 특수관계자 간의 수익(혹은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감소하지 않았어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은 특수관계자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2011년 K-IFRS 도입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원칙 중심의 K-IFRS는 해당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계정 분류에 대한 기업의 재량적 영역이 넓어졌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대로 특수관계자 공시 지침도 약화되었으므로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중 수익 발생 시 매출보다는 기타수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마다 특수관계자거래의 내역이 다르게 공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기에 2013년 금감원에서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시 모범사례가 발표

3) 논문 전체에서 ‘기타수익’은 특정 계정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외의 모든 수익’을 의미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타비용’의 경우에도 ‘매입 관련 이외의 모든 비용’을 뜻한다.

되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매출과 기타수익을 보다 분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상세공시 권고였다. 모범사례 발표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을 분명하게 보고하게 되었고, 실제로 정책적 효과가 있어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 및 이익예측편의를 감소시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된다(유승경과 김병호 2020). 즉,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계 재량성이 가장 높은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면서 재량성이 점차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관계자거래의 분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과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증여의제 도입 시 매출 비중 감소 요인이 생겼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특수관계자 매출과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과의 합)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대비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타수익 대비 매출은 감소하게 되므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관심 변수로 두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시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상세권고인 모범사례 발표 이후에는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회계환경 변화에 규제 대상인 재벌기업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짐작되므로, 재벌기업들의 매출 분류 변화를 비재벌기업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전체 표본기간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의 추이를 살펴보고, 2001년부터 2012년, 2011년부터 2016년으로 각각 회계기간을 구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연구가설에 대해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표본구성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 V 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한다.

II.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1.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수혜법인의 매출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사실상 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기획재정부, 2011). 이는 일부 재벌그룹 등에서 일감몰아주기로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신설되었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⁴⁾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⁵⁾ 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을 초과하는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2014년부터 적용이 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에 따라 해당되는 매출액⁶⁾을 분자, 분모에서 제외하되,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

6)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및 같은 법 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와의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공공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일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 이익을 산출한다⁷⁾.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소 조건이 다르지만,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 때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에 세무조정사항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표 1〉 기업유형별 증여의제이익 계산

구분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중견기업·중소기업 이외 법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정리하자면, 기업의 특수관계자 매출은 증여의제와 관련된 조세유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과세요건 자체 해당 여부이며, 두 번째는 증여의제 이익의 크기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보다 약간 높은 기업의 경우, 수익 중 일부를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게끔 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기준보다 크게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후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증여의제 수혜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매출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만우 등(2015)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개인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수혜법인의 경우 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증여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과 2013년에 이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추가분석을 통해 수혜법인이 증여세 과세기간에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적 이익조정의 방법 중 비정상 생산비용 및 비정상 판매관리비의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8)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23조),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제40조),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1조), 퇴직보험료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재고자산의 평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포함한다.

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업이 재량적으로 영업활동을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성태 등(2015)은 2011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740개 수혜법인에 대해 2011년과 2012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액을 추정한 결과 2012년에 증여세 과세 추정액과 내부거래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내부거래가 실제로 제3자 거래로 전환된 사례는 찾지 못 하였기 때문에 내부거래비율 감소가 정책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자들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세규정이 여러 가지 요건과 특례규정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회계환경 변화

(1) K-IFRS 도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공교롭게도 K-IFRS의 도입과 같이 이루어졌다. K-IFRS 적용 전의 회계기준(이하 K-GAAP)은 규정중심(rule-based approach)이어서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K-IFRS는 원칙중심기준(principle-based approach)이며 일정 원칙 하에 기업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되, 선택근거 및 회계수치의 도출근거를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K-GAAP은 계정 분류 등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였지만, K-IFRS는 재량권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하여 과거 K-GAAP에서는 영업손익을 구분·표시하도록 했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으로 정의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도 상세하게 열거하였다. 최초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이 없었고 재무제표의 양식 및 표시의 자율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조기도입 기업들 중 영업이익을 표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나타나서 2010년 11월 영업이익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정의나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항목이 과거 K-GAAP 적용 때와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영업손익의 구성항목이 상이하여 2011년에는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업손익이 보고되었다. 홍주연과 박성진(2014)은 2011년 K-IFRS를 도입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공시 실태를 보고하였는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기타수익, 기타비용 포함)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유형(TYPE 1), 종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한 유형(TYPE 2), TYPE 1에서 기타이익과 기타손실을 구분하여 영업이익에서 제외한 유형(TYPE 3)으로 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TYPE 1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공시한 영업이익이 다른 유형으로 계산한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이 많아서 대부분의 회사가 영업이익을 유리한 방향으로 공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슷하게 이기세와 전성일(2014)에 의하면 K-IFRS 도입 후 보고된 영업이익은 K-GAAP 적용 시보다 더 높으며, K-GAAP상 영업이익이 낮을수

록 K-IFRS로 전환 시 영업이익을 더 낮게,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K-IFRS상 영업이익을 더욱 높게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2년 9월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추가개정 및 회계적용의견서를 발표하여 K-IFRS 체제하에서도 영업손익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영업이익의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의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내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에 ‘조정영업이익’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하면 2011년에는 수익을 매출이 아니라 기타수익으로 분류하였어도 영업이익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계정 분류의 자율성이 가장 컸고, 2012년 이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한 회계기준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지만, K-IFRS 도입 이전에 비해서는 도입 이후의 계정 분류 자율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와 모범사례 발표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 편이 다른 한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이 증가한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 최정호 2011 ; 김영화 2012 ; 고종권 등 2019).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큰 경우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최원욱 등 2011), 적자보고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김진태와 배종일 2013). 공시와 관련해서는 경영자가 자발적 공시의 내용과 시기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를 통한 이익을 도모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존재한다(Rogers and Stocken 2005 ; Cheng and Lo 2006). Lo and Wong(2011)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발적 공시가 감소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김태동 외(2016)는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손익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propping)에 공시 수준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Kohlbeck and Mayhew(2010)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의 기업가치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는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이 허용되는 환경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시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며⁹⁾,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1년 K-IFRS 도입시에도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한국채택기업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1조의2)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현황을 포함한 기업집단 등의 공시(제11조의4)를 요구하고 있다.

계기준서는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하지만, 거래의 상대방 및 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주석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총액만을 공시하거나 거래항목을 최소한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였다. 특히 특수관계자 매출·매입의 세부 내역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¹⁰⁾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11월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공표하였다¹¹⁾.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은 지배기업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한 경우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유형을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상세공시 권고였다.

이러한 모범사례 발표는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K-IFRS 제102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도록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만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품질이 높아졌기에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승경과 김병호(2020)에 의하면 이러한 상세공시 권고 도입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 및 이익예측편의를 감소시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항목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이익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항목의 구분 공시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비대칭 감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가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에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약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정상거래비율 30%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 증여의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0% 초과시에도 그 비율이 낮을수록 증여세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혜법인은 특수관계자 매출을 낮출 유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이만우 등(2015)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11년에 비해 2012, 2013년에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성태 등(2015)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감소

10) 2013. 6. 3. 조세일보, “IFRS의 거꾸로 간 회계투명성-내부거래 감추기”

11) 2013. 11.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했는 지 여부, 즉 전체 특수관계자 수익 감소 여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하여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매출로 분류할지 매출 외의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지 여부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며, 때때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상표권 사용료수입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러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¹²⁾도 존재한다. 매출액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사용료의 제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된 영업활동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한국회계기준원). 그러므로, 정관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목적 부합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매출액으로 분류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 없는 재량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특히나 시기적으로 증여의제 규정은 K-IFRS 도입시기에 도입되었으며, 원칙중심인 IFRS는 계정 분류에 대한 기업별 재량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비교적 명확했던 계정분류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공시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2011년 K-IFRS가 도입된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로 분류했던 수익 계정 분류를 영업외수익이나 잡이익 등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가 이전보다도 어렵게 되었다.

반면 2013년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에 대하여 상세공시를 권고한 모범사례 발표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자의적 계정 분류에 대하여 제약이 생겼다. 기업 입장에서 상세하게 특수관계자거래를 공시해야 하므로 이전보다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리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을 매출 외의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업은 이렇게 증가된 유인에 대해 K-IFRS 도입과 모범사례 발표 등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을 달리할 것이므로 가설 1-1과 가설 1-2를 다르게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가설 1-1은 때마침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유인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에 기반하여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매출에 대한 자의적 분류 비중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정한다. 반면, 모범사례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전만큼 특수관계자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이 아닌 다른 기타수익 계정으로 분류하

12)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유아교재 관련 사업을 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과세관청이 확인한 후, 영업손익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증여세 및 가산세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반드시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결정요지는 상표권의 임대업이 정관상 사업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종이 다르며,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므로,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매출에 대한 자의적 분류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가설 1-2를 설정한다.

가설 1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과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 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감소했을 것이다.

가설 1-2 :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재벌)에 속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세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2011년 이후 재벌기업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 수익 계정을 매출 외의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는 전략을 택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이 회계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수혜기업 개인주주의 증여세 부담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장기업이며 재벌기업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채무자, 언론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이 존재하므로 회계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심상규(2018)는 경영자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대기업집단 기업들은 규제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는 유인이 크고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K-IFRS 도입과 모범사례 발표는 회계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K-IFRS가 도입된 초기 단계에는 계정 분류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유재량도가 높아진 것이며, 모범사례 발표는 재량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기준과 공시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수관계자거래 매출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재량도가 높았을 때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이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재량도가 낮아졌을 때는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이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 재벌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과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 변화가 비재벌기업보다 클 것이다.

Ⅲ. 표본구성 및 연구방법

1. 표본구성

본 연구의 표본은 K-IFRS 도입(2011년)과 모범사례 발표(2013년) 이전·이후 기업의 재무보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주)가 제공하는 TS2000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 기업 중 12월 결산 제조업 영위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업에 속한 기업,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연구변수 자료가 없는 기업과 자본잠식기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회계환경 변화로 인해 특수관계자 거래의 항목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거래는 KIS-Value와 TS2000 양쪽에서 추출하여 상호검증을 통해 누락된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KIS-Value에서 특수관계자 매출, 특수관계자 매입,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특수관계자 기타비용 내역을 추출하였고, TS2000에서는 주식사항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추출하고 기업마다 연도별 매출, 매입, 기타수익, 기타비용의 합계액을 구하여서 상호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의 Panel A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표본은 총 13,444개 기업/연도로 선정되었다.

<표 2>의 Panel B는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재벌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매년 재벌과 비재벌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전체 표본 기준으로 재벌이 14.4%, 비재벌이 85.6% 비중을 차지한다.

〈표 2〉 표본의 구성

Panel A : 표본 선정과정	
구 분	전체 표본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12월 결산 제조업 상장 기업	24,157
(-) 연구변수 자료가 없는 기업	(4,387)
(-) 자본잠식기업	(82)
(-)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5,416)
(-) 특수관계자 매출과 기타수익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기업	(828)
최종표본	13,444

〈표 2〉 표본의 구성 (계속)

Panel B : 표본기업의 연도별 분포(재벌 vs. 비재벌)			
연도	재벌기업 (비중)	비재벌기업 (비중)	전 체
2001	82 (18.6%)	359 (81.4%)	441 (100%)
2002	86 (15.8%)	460 (84.2%)	546 (100%)
2003	90 (14.4%)	537 (85.6%)	627 (100%)
2004	85 (12.6%)	590 (87.4%)	675 (100%)
2005	90 (12.4%)	638 (87.6%)	728 (100%)
2006	94 (12.0%)	689 (88.0%)	783 (100%)
2007	103 (11.9%)	759 (88.1%)	862 (100%)
2008	111 (11.9%)	821 (88.1%)	932 (100%)
2009	128 (13.1%)	850 (86.9%)	978 (100%)
2010	151 (14.6%)	882 (85.4%)	1,033 (100%)
2011	170 (15.7%)	914 (84.3%)	1,084 (100%)
2012	191 (16.6%)	957 (83.4%)	1,148 (100%)
2013	141 (14.8%)	809 (85.2%)	950 (100%)
2014	134 (15.6%)	723 (84.4%)	857 (100%)
2015	142 (15.8%)	757 (84.2%)	899 (100%)
2016	144 (16.0%)	757 (84.0%)	901 (100%)
Total	1,942 (14.4%)	11,502 (85.6%)	13,4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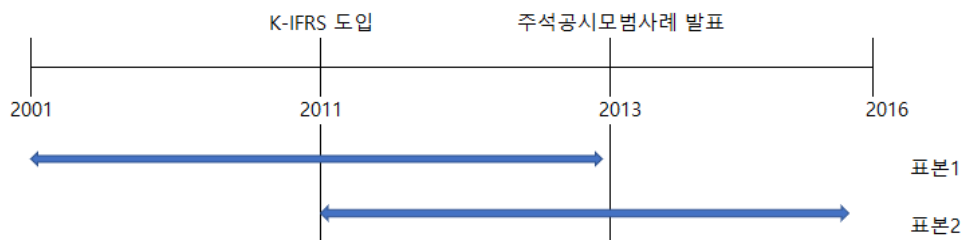
2. 연구방법

공시환경은 K-IFRS 도입 이전 기간(2001-2010), K-IFRS 도입 이후 모범사례 발표 전 (2011-2012), 모범사례 발표 후(2013년 이후)가 달라졌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계규제가 가장 약한 때였고, 2013년 이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며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2011년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표본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K-IFRS 도입의 영향과 모범사례 발표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하여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기간은 2001-2012([표본1]), 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기간은 2011-2016([표본2])로 하고자 한다¹³⁾.

13) 특수관계자 계정 분류의 일관된 패턴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1-2010년 기간을 포함하였으며, 2011-2012년의 급변한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 감소와 대비하기 위해 2013-2016년의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 증가를 제시할 수 있는 표본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분석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양쪽 이벤트의 영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2001년부터 2016년 전체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한다면, 2013년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가 K-IFRS 도입 때문인지 모범사례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K-IFRS 도입과 모범사례 발표가 매출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해석이 힘든데, 표본기간 구분을 통해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1〉 표본기간 ([표본1] vs. [표본2])



먼저 각 구간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고, 단변량 분석을 수행한다. 단변량 분석 수행 후,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상이 변한 데에는 K-IFRS나 모범사례 발표 등 회계환경 변화 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특수관계자 매출 분류 변화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K-IFRS 와 모범사례 도입 이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SR_{i,t} = \beta_0 + \beta_1 IFRS_{i,t} (D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CFO_{i,t} + \beta_6 MB_{i,t} + \beta_7 LRPT_{i,t} + \text{연도 더미} + \text{산업 더미} + \epsilon_{i,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i 기업, t 시점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R :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매출 비중

SR1 : 특수관계자 수익 중 매출 비중 = 특수관계자 매출액 / (특수관계자 매출액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SR2 : 특수관계자 매출액 / (특수관계자 매출액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 특수관계자 매입 + 특수관계자 기타비용)

IFRS : IFRS 더미 변수. 연도가 2011년 이후이면 1, 2010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DR : 모범사례(Disclosure Recommendations) 더미 변수. 연도가 2013년 이후이면 1, 2013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SIZE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한 기업규모 변수

LEV : 부채비율 (=부채/총자산)

ROA : 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기중평균자산)

CFO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기중평균자산)

MB :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 (=보통주 발행주식수 × 주가) / 순자산

LRPT : 전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비중 (=특수관계자 총거래금액/매출)

ϵ : 잔차항.

종속변수인 SR 은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본 변수는 전체 매출 중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매출과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간의 상대적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전체 매출과의 비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특수관계자별 거래내역은 매출, 매입, 기타수익, 기타비용으로 각각 보고되는데, $SR1$ 은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과 특수관계자 매출 간의 비중 변화를 보기 위해, 특수관계자 매출을 특수관계자 매출과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의 합으로 나눠서 구한 값이다. $SR2$ 는 특수관계자 매출을 특수관계자 전체 거래금액(특수관계자 매출,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특수관계자 매입, 특수관계자 기타비용의 합)으로 나눠서 구하였다.

가설 1-1과 관련된 변수는 $IFRS$ 인데, 2011년 이후이면 1인 더미 변수이다. 만일 $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면, [표본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수행 시 $IFRS$ 의 회귀계수인 β_1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DR 은 가설 1-2와 관련하여 모범사례(Disclosure Recommendations) 발표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2013년 이후이면 1인 더미 변수이다. 특수관계자 주식 공시 모범사례가 발표된 2013년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는 선택이 줄어들었다면, [표본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수행 시 DR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자산수익률(ROA), 영업현금흐름(CFO),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B), 전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LRPT$)을 분석모형에 포함했다. 기업의 매출은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SIZE$ 를 넣어 통제하였다. 부채비율(LEV)과 영업현금흐름(CFO)은 기업의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산수익률(ROA)은 기업이 수익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B)은 Collins and Kothari(1989)가 성장 가능성의 측정치로 보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기업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LRPT$ 은 전기의 총 특수관계자 거래금액(=특수관계자 매출+특수관계자 기타수익+특수관계자 매입+특수관계자 기타비용)을 전체 매출로 표준화한 값이며, 전기의 특수관계자 거래규모(기저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다. 추가적으로 연도별,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와 산업 더미를 모형에 포함했다. 모든 연속 변수는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1% 수준에서 winsorize 하였다.

재벌 여부와 관련된 가설 2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벌에 속하였을 때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인 더미변수 CH 를 만들어서, 앞의 식(1)에 회계환경 변화 변수와의 교호항을 넣는다. $IFRS$ 와 DR 의 방향이 각기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식(2), 식(3)을 각각 확인한다.

$$SR_{i,t} = \beta_0 + \beta_1 IFRS_{i,t} + \beta_2 CH + \beta_3 CH \times IFRS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CFO_{i,t} + \beta_8 MB_{i,t} + \beta_9 LRPT_{i,t} + \text{연도 더미} + \text{산업 더미} + \epsilon_{i,t} \quad (\text{식 } 2)$$

$$SR_{i,t} = \beta_0 + \beta_1 DR_{i,t} + \beta_2 CH + \beta_3 CH \times D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CFO_{i,t} + \beta_8 MB_{i,t} + \beta_9 LRPT_{i,t} + \text{연도 더미} + \text{산업 더미} + \epsilon_{i,t} \quad (\text{식 3})$$

재벌기업은 2011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게 되었고,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을 낮출 확률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매출과 기타수익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으므로, 2011년 이후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보다도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식(2)에서 교호항 $CH \times IFRS$ 의 계수 β_3 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재벌기업의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식공시 모범사례가 발표되어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여전히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유인이 존재하지만, 공시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3)에서 교호항 $CH \times DR$ 의 계수 β_3 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

<표 3>은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는데, Panel A는 K-IFRS 효과를 보기 위한 2001-2012년까지의 표본([표본1]), Panel B는 모범사례 발표 효과를 보기 위한 2011-2016년까지의 표본([표본2])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Panel A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수익(매출과 기타수익의 합) 중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SR1$ 은 평균적으로 72.9%를 차지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전체 금액) 중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SR2$ 는 39.19%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반면, Panel B의 $SR1$ 은 57.87%로 [표본2]의 $SR1$ 평균이 [표본1]보다 15%p 가량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SR2$ 도 Panel B의 평균은 33.19%로 [표본2]의 $SR2$ 평균이 [표본1]보다 6%p 가량 낮다.

단변량 분석에서 $SR1$ 과 $SR2$ 의 의미를 살피기 위하여 전체 매출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Srp , 전체 매출 대비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비중을 나타내는 Orp , 전체 매출 대비 특수관계자 매입 비중을 나타내는 Prp , 전체 매출 대비 특수관계자 기타비용 비중을 나타내는 Erp , 매출 대비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인 $RPT(=Srp+Orp+Prp+Erp)$ 의 기술통계량도 살펴보았다. 이는 평균으로 Panel A에서는 각각 10.99%, 3.78%, 8.37%, 3.1%, 26.54%의 값을 가지며, Panel B에서는 10.64%, 7.02%, 6.44%, 4.47%, 28.9%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량

Panel A. 표본1 (2001-2012, N=9,837)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i>SR1</i>	0.7290	0.4183	0.3981	1.0000	1.0000
<i>SR2</i>	0.3919	0.3619	0.0131	0.3201	0.7220
<i>Srp</i>	0.1099	0.1854	0.0005	0.0276	0.1284
<i>Orp</i>	0.0378	0.1292	0.0000	0.0000	0.0074
<i>Prp</i>	0.0837	0.1396	0.0000	0.0168	0.1070
<i>Erp</i>	0.0310	0.0777	0.0000	0.0000	0.0199
<i>RPT</i>	0.2654	0.2868	0.0553	0.1599	0.3792
<i>SIZE</i>	18.9548	1.4449	17.9582	18.6640	19.6327
<i>LEV</i>	0.4257	0.1982	0.2698	0.4295	0.5700
<i>ROA</i>	0.0226	0.1029	0.0038	0.0352	0.0745
<i>CFO</i>	0.0505	0.0914	-0.0021	0.0494	0.1036
<i>MB</i>	1.2010	1.1269	0.5138	0.8435	1.4561
Panel B. 표본2 (2011-2016, N=5,83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i>SR1</i>	0.5787	0.4586	0.0000	0.8937	1.0000
<i>SR2</i>	0.3319	0.3610	0.0000	0.1796	0.6465
<i>Srp</i>	0.1064	0.1979	0.0000	0.0119	0.1128
<i>Orp</i>	0.0702	0.1831	0.0000	0.0028	0.0268
<i>Prp</i>	0.0644	0.1323	0.0000	0.0007	0.0605
<i>Erp</i>	0.0447	0.0894	0.0000	0.0070	0.0437
<i>RPT</i>	0.2890	0.3170	0.0489	0.1621	0.4327
<i>SIZE</i>	19.1826	1.3781	18.2302	18.9380	19.8738
<i>LEV</i>	0.3972	0.2038	0.2311	0.3958	0.5518
<i>ROA</i>	0.0157	0.0936	-0.0032	0.0271	0.0604
<i>CFO</i>	0.0468	0.0800	0.0033	0.0448	0.0922
<i>MB</i>	1.4843	1.2978	0.6700	1.0632	1.7888

주) *SR1*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 *SR2*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기타수익+매입+기타비용), *Srp* : 특수관계자 매출액/매출액, *Orp*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매출액, *Prp* :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액, *Erp* : 특수관계자 기타비용/매출액, *RPT* : 특수관계자 거래금액/매출액(=*Srp*+*Orp*+*Prp*+*Erp*), *IFRS* : *IFRS* 더미 변수. 연도가 2011년 이후이면 1, 2010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DR* : 모범사례(Disclosure Recommendations) 더미 변수. 연도가 2013년 이후이면 1, 2013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SIZE*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한 기업규모 변수, *LEV* : 부채비율(=부채/총자산), *ROA* :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기중평균자산), *CFO* :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기중평균자산), *MB* :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보통주 발행주식수×주가)/순자산)

다른 통제변수의 평균값이나 중위수, 표준편차는 [표본1]과 [표본2]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SR1*과 *SR2*는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의 비중을 의미하므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중 전체 수익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SR1*은 *SIZE*, *MB*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LEV*, *ROA*, *CFO*, *RPT*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SR2*는 *SR1*가 비슷하지만, *LEV*, *CFO*와는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다. 대략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은 규모나 성장성이 클수록 낮고, 수익성과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R* 변수는 실질적인 매출 비중의 의미와 자의적인 분류로 인한 재량성의 의미를 모두 지니기 때문에,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상관관계만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i>SR1</i>	<i>SR2</i>	<i>SIZE</i>	<i>LEV</i>	<i>ROA</i>	<i>CFO</i>	<i>MB</i>
<i>SR2</i>	0.636***						
<i>SIZE</i>	-0.044***	-0.056***					
<i>LEV</i>	0.036***	-0.010	0.198***				
<i>ROA</i>	0.055***	0.032***	0.189***	-0.287***			
<i>CFO</i>	0.033***	-0.001	0.116***	-0.158***	0.466***		
<i>MB</i>	-0.039***	-0.027***	-0.070***	0.054***	-0.046***	0.047***	
<i>RPT</i>	0.093***	0.125***	0.136***	-0.030***	-0.017**	-0.018**	0.019**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주2)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관계수이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5>는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변화를 각 이벤트 시점 이전과 이후로 비교한 단변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anel A는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거래 수익(매출과 기타수익의 합) 중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SR1*의 K-IFRS 도입 전 평균값은 85.3%였지만, 도입 후 평균값은 30.6%였다. 이는 도입 이후 54.7%p 가량 대폭 감소한 것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유사하게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전체 금액) 중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SR2*는 도입 이전 45.6%의 평균값이었는데, 도입 이후 17.4%로 크게 감소했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체 특수관계자 수익(혹은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기타수익이 증가하여 계정 분류만 바뀐 것(매출→기타수익)을 의미한다.

〈표 5〉 특수관계자거래 중 매출 비중의 변화

Panel A. K-IFRS 도입 영향(2001-2012)				
	2001-2010(A)	2011-2012(B)	Diff(B-A)	t-stat
전체기업				
SR1	0.853	0.306	-0.547***	-54.49
SR2	0.456	0.174	-0.282***	-36.56
재벌				
SR1	0.877	0.135	-0.742***	-37.46
SR2	0.474	0.073	-0.401***	-26.98
비재벌				
SR1	0.849	0.339	-0.510***	-45.59
SR2	0.453	0.193	-0.260***	-29.98
Panel B.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 영향(2011-2016)				
	2011-2012(A)	2013-2016(B)	Diff(B-A)	t-stat
전체기업				
SR1	0.306	0.747	0.441***	39.05
SR2	0.174	0.430	0.256***	28.91
재벌				
SR1	0.135	0.774	0.639***	27.25
SR2	0.073	0.453	0.380***	20.95
비재벌				
SR1	0.339	0.742	0.403***	32.12
SR2	0.193	0.425	0.232***	23.46

주) SR1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 SR2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특수관계자 매입+특수관계자 기타비용)

K-IFRS 도입 이전 특수관계자 거래 중 수익의 대부분을 매출로 보고하고 있었는데, K-IFRS 도입 이후 매출로 보고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져서, 이전에는 매출로 보고하였던 거래를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게 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매출 분류 비중 감소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재벌의 경우 K-IFRS 도입 이전에는 비재벌보다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비재벌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R1, SR2 두 변수에 모두 해당되며, SR1의 경우 재벌은 74.2%p가 감소했고 비재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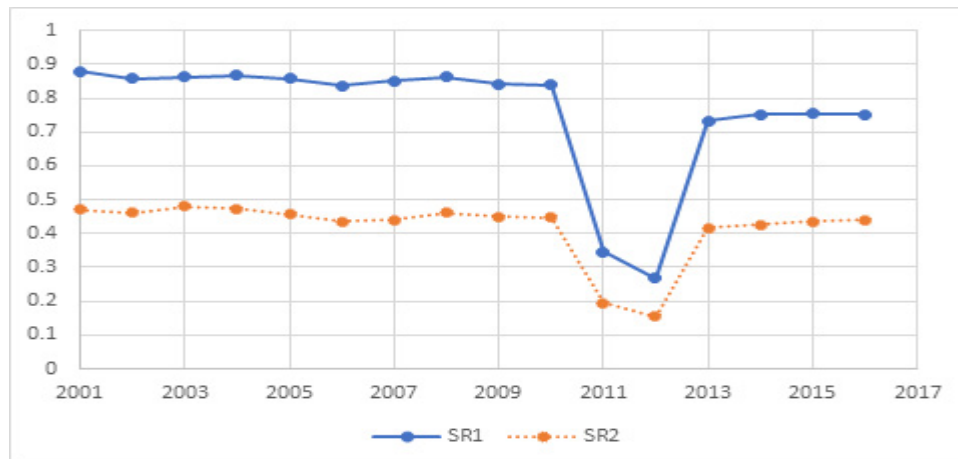
51%p가 감소했다. SR2의 경우 재벌은 40.1%p 가량 감소한데 비해 비재벌은 26%p 감소했고,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재벌과 비재벌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의 비중이 감소했지만, 그 정도는 재벌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Panel B는 상세공시 권고인 모범사례 발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는데, SR1은 발표 이전 30.6%였는데, 이후에 74.7%로 44.1%p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이다. SR2는 발표 이전 17.4%였다가 43%로 증가하였고, 이도 또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특수관계자 거래 중 수익을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을 다시 높이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범사례 발표 이후 매출 분류 비중의 증가가 재벌과 비재벌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재벌의 경우 모범사례 발표 이전 13.5%의 SR1이 발표 이후 77.4%로 증가했고, 비재벌은 33.9%가 74.2%로 증가하였다. SR2의 경우에도 재벌은 7.3%였다가 45.3%로 증가한 데 비해, 비재벌은 19.3%에서 42.5%로 증가하였다.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의 비중이 재벌기업에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의 변화를 전체 샘플 기간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듯이 2011년에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2013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2>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의 추이(2001-2016)



주) SR1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 SR2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특수관계자 매입+특수관계자 기타비용)

하지만, 2011년 수준으로 매출 비중이 회복되지는 않았고, 2011~2012년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FRS 도입 이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매출 이외의 계정으로 분류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 실제로 특수관계자 거래의 감소 때문일 수 있으므로,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구성하는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6>은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거래금액 총액을 매출로 나누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비중(RPT)의 변화를 이벤트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이다. K-IFRS 이전 이후로 살펴본 Panel A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RPT는 K-IFRS 도입 이후 감소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재벌은 3.2%p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비재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3%p 증가하였다. 즉,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감소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¹⁴⁾.

모범사례 발표 이전 이후를 비교한 Panel B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재벌, 비재벌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비중이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의 증가가 매출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표 6〉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의 변화

Panel A. K-IFRS 도입 영향(2001-2012)				
	2001-2010(A)	2011-2012(B)	Diff(B-A)	t-stat
전체기업				
RPT	0.257	0.293	0.036***	4.78
재벌				
RPT	0.362	0.394	0.032	1.55
비재벌				
RPT	0.241	0.274	0.033***	4.12

14) 표준화를 위해 분모로 사용된 매출 금액이 특수관계자 매출 때문에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감소하였어도 매출 감소로 비중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이에 총자산으로 다시 표준화를 하여 분석하여 보았을 때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6〉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의 변화 (계속)

Panel B.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 영향(2011-2016)				
	2011-2012(A)	2013-2016(B)	Diff(B-A)	t-stat
전체기업				
RPT	0.293	0.287	-0.006	-0.76
재벌				
RPT	0.394	0.352	-0.042	-1.84
비재벌				
RPT	0.274	0.275	0.001	0.11

주) RPT : 특수관계자 거래금액/매출액

<표 7>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구성하는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K-IFRS 도입 영향을 살펴본 Panel A에서 전체 표본은 매출이 감소하고 기타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매출비중 감소가 기타수익 비중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매출로 분류했던 거래를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가설 1-1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패턴으로 매입은 감소하고 기타비용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매입은 감소하고, 지출이 대부분 기타비용으로 분류되었다고 보인다. 재벌과 비재벌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도 전체 표본의 패턴과 비슷하게 매출, 매입 비중이 줄고 기타수익, 기타비용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재벌이 비재벌보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Panel B는 모범사례 발표의 영향을 살펴본 단변량 분석 결과인데, 전체 표본의 경우, 매출 비중은 증가하고 기타수익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모범사례 발표 이후 매출 비중이 증가한 것이 기타수익을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매입 비중이 증가하고, 기타비용이 감소한 것도 매출에 따른 매입이 증가하고, 전에 기타비용을 분류했던 부분을 매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가설 1-2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재벌과 비재벌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도 전체 표본의 패턴과 비슷하게 매출, 매입 비중이 늘고 기타수익, 기타비용 비중이 줄어들었다. 모든 구성요소에 있어서 재벌이 비재벌보다 모범사례 발표 이전·이후의 차이가 크며, 이는 가설 2를 지지한다고 보인다.

〈표 7〉 특수관계자거래요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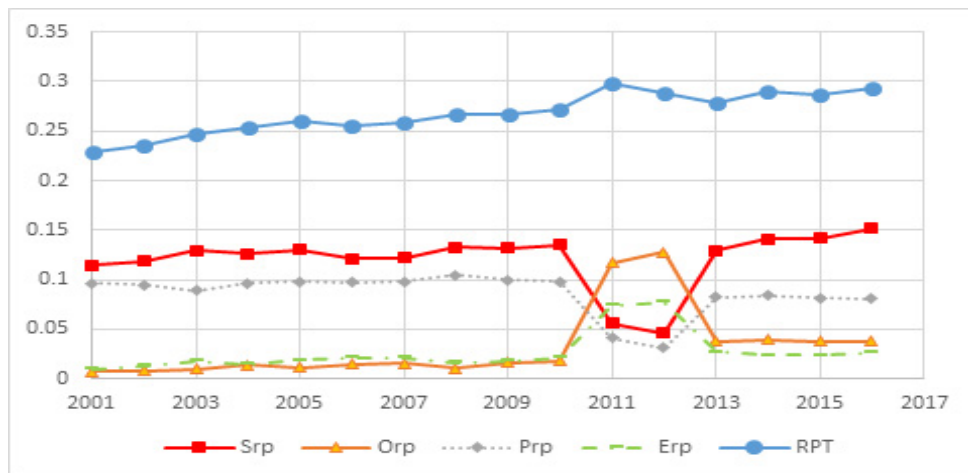
Panel A. K-IFRS 도입 영향(2001-2012)				
	2001-2010(A)	2011-2012(B)	Diff(B-A)	t-stat
전체기업				
Srp	0.126	0.050	-0.076***	-21.18
Orp	0.012	0.104	0.092***	25.40
Prp	0.096	0.035	-0.061***	-23.07
Erp	0.017	0.068	0.052***	24.38
재벌				
Srp	0.196	0.025	-0.171***	-18.31
Orp	0.015	0.186	0.170***	15.62
Prp	0.124	0.017	-0.107***	-17.40
Erp	0.021	0.108	0.087***	14.63
비재벌				
Srp	0.116	0.055	-0.060***	-15.48
Orp	0.012	0.088	0.077***	20.92
Prp	0.092	0.038	-0.054***	-18.23
Erp	0.016	0.061	0.045***	20.20
Panel B.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 영향(2011-2016)				
	2011-2012(A)	2013-2016(B)	Diff(B-A)	t-stat
전체기업				
Srp	0.050	0.139	0.089***	19.42
Orp	0.104	0.030	-0.074***	-18.68
Prp	0.035	0.080	0.045***	14.58
Erp	0.068	0.024	-0.044***	-19.89
재벌				
Srp	0.025	0.172	0.147***	13.38
Orp	0.186	0.048	-0.138***	-11.39
Prp	0.017	0.078	0.061***	9.12
Erp	0.108	0.034	-0.075***	-12.04
비재벌				
Srp	0.055	0.133	0.078***	15.52
Orp	0.088	0.027	-0.061***	-15.33
Prp	0.038	0.081	0.042***	12.19
Erp	0.061	0.023	-0.038***	-16.45

주) Srp : 특수관계자 매출액/매출액, Orp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매출액, Prp :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액,
Erp : 특수관계자 기타비용/매출액

<그림 3>은 2001년부터 2016년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비중과 거래요소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표본기업의 평균을 보았을 때, 2001년부터 특수관계자거래금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1년에 증가하고 다소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략 27%~30% 범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매출금액 비중은 2011~2012년에 크게 감소하고, 기타수익 비중은 2011~2012년에 크게 증가하여 매출로의 분류가 줄고 기타수익으로의 분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 이후로는 매출로의 분류가 다시 늘어났고, 기타수익으로의 분류는 줄어들어서 수익의 매출 분류가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매입과 기타비용 비중도 매출 분류 패턴과 유사하게, 매입 비중은 2011년 감소했다고 2013년 증가하고, 기타비용 비중은 2011년 증가했다가 2013년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K-IFRS나 증여의제 규정이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회계상 계정 분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특수관계자 거래금액비중과 거래요소의 추이(2001-2016)



주) Srp : 특수관계자 매출액/매출액, Orp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매출액, Prp :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액, Erp : 특수관계자 기타비용/매출액, RPT : 특수관계자 거래금액/매출액

<표 8>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1](2001~2012)을 이용하여 식(1)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특수관계자 매출액과 특수관계자 기타수익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변수인 $SR1$ 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변수 $IFRS$ 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졌다. 이는 K-IFRS 도입이 된 2011년 이후에 특수관계자거래 중 수익이 매출로 분류되는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8〉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분류 변화

변수	SR1	SR2
<i>IFRS</i>	-0.606*** (-33.073)	-0.317*** (-17.718)
<i>SIZE</i>	-0.011*** (-3.973)	-0.018*** (-6.887)
<i>LEV</i>	0.110*** (5.355)	0.031 (1.607)
<i>ROA</i>	0.235*** (5.476)	0.198*** (5.027)
<i>CFO</i>	0.003 (0.058)	-0.102** (-2.290)
<i>MB</i>	-0.010*** (-2.681)	-0.006* (-1.759)
<i>LRPT</i>	0.154*** (11.487)	0.154*** (11.065)
Industry dummies included		
Year dummies included		
Constant	1.178*** (23.032)	0.815*** (14.509)
Observations	9,837	9,837
Adj R-squared	0.334	0.157

주1) SR1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 SR2 : 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특수관계자 기타수익+특수관계자 매입+특수관계자 기타비용), IFRS : IFRS 더미 변수. 연도가 2011년 이후이면 1, 2010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SIZE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한 기업규모 변수, LEV : 부채비율(=부채/총자산), ROA :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기중평균자산), CFO :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기중평균자산), MB :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보통주 발행주식수×주가)/순자산), LRPT : 전기 특수관계자 거래비중(=특수관계자 총거래금액/매출)

주2) 식 (1)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추정된 계수와 괄호 안에 t 통계량(Huber-White's robust t-statistics)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 옆의 별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 $p < 0.01$, ** $p < 0.05$, * $p < 0.1$

통제변수 중 기업규모(SIZE),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B) 변수에 대한 계수는 SR1과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며, 이는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큰 경우에는 매출로 분류하는 빈도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채비율(LEV)과 자산수익률(ROA), 전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LRPT)변수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전기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당기에 특수관계자 수익을 매출로 분류하는 빈도가 기타수익 대비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전체 특수관계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변수 *SR2*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SR1*에 대한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IFRS*의 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전체 대비여도 매출로 분류되는 비중이 K-IFRS 도입 이후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통제변수 중 부채비율(*LEV*)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영업현금흐름(*CFO*)에 대한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진다는 면에서 *SR1*의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표 9>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2](2011~2016)을 이용하여 식(1)을 *IFRS* 대신 *DR*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9〉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분류 변화

변수	<i>SR1</i>	<i>SR2</i>
<i>DR</i>	0.419*** (22.722)	0.253*** (16.647)
<i>SIZE</i>	0.025*** (-6.073)	-0.021*** (-6.110)
<i>LEV</i>	0.134*** (4.349)	0.012 (0.458)
<i>ROA</i>	0.288*** (4.077)	0.147** (2.576)
<i>CFO</i>	-0.009 (-0.114)	-0.013 (-0.212)
<i>MB</i>	-0.007 (-1.484)	-0.006 (-1.575)
<i>LRPT</i>	0.199*** (9.784)	0.214*** (11.830)
Industry dummies included		
Year dummies included		
Constant	0.916*** (11.388)	0.634*** (9.576)
Observations	5,839	5,839
Adj R-squared	0.274	0.169

주1) *DR* : 모범사례 더미 변수. 연도가 2013년 이후이면 1, 2013년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지도록 함.

주2) 식 (1)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추정된 계수와 괄호 안에 *t* 통계량(Huber-White's robust *t*-statistics)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 옆의 별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 $p < 0.01$, ** $p < 0.05$, * $p < 0.1$

SR1, *SR2*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두 변수 *DR*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졌고,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R*은 모범사례가 발표된 2013년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므로, 모범사례가 발표된 이후에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설정한 가설 1-2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는 <표 8>과 거의 비슷하며, 다만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B*) 변수의 회귀계수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만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8>과 <표 9>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다시 분석하였을 때, 모범사례 발표 이후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이 다시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설 1-1, 1-2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과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은 재벌기업과 관련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1](2001~2012)을 이용하여 식(2)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SR1*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변수 *IFRS*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재벌기업을 나타내는 *CH*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 *CH*와 *IFRS*의 교호항인 *CH*×*IFRS*의 회귀계수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재벌기업의 경우 2001~2012년 기간 중 비재벌기업에 비해서 특수관계자 거래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의 비중이 높았으나, K-IFRS가 도입되면서 비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재벌기업의 기타수익 대비 매출의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호항 *CH*×*IFRS*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가설 2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SR2*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 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회귀계수를 보여 주어서 특수관계자거래 금액 전체 대비하여도 재벌의 경우 매출로 분류하는 비중이 K-IFRS 이후 더욱 감소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제변수의 결과는 <표 8>과 흡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재벌기업의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분류 변화

변수	<i>SR1</i>	<i>SR2</i>
<i>IFRS</i>	-0.569*** (-29.996)	-0.294*** (-16.034)
<i>CH</i>	0.032** (2.469)	0.041*** (3.135)
<i>CH</i> × <i>IFRS</i>	-0.219*** (-9.605)	-0.131*** (-7.698)

〈표 10〉 재벌기업의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분류 변화 (계속)

변수	SR1	SR2
<i>SIZE</i>	-0.008** (-2.349)	-0.019*** (-5.888)
<i>LEV</i>	0.110*** (5.389)	0.031 (1.569)
<i>ROA</i>	0.229** (5.357)	0.198*** (5.020)
<i>CFO</i>	-0.006 (-0.127)	-0.109** (-2.445)
<i>MB</i>	-0.010*** (-2.669)	-0.006* (-1.864)
<i>LRPT</i>	0.155*** (11.492)	0.152*** (10.835)
Industry dummies included		
Year dummies included		
Constant	1.114*** (18.682)	0.833*** (12.603)
Observations	9,837	9,837
Adj R-squared	0.341	0.160

주1) CH : 재벌집단에 속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CH×IFRS : CH와 IFRS의 교호항, 다른 변수의 정의는 <표 8> 참조.

주2) 식 (2)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추정된 계수와 괄호 안에 t 통계량(Huber-White's robust t-statistics)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 옆의 별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 $p < 0.01$, ** $p < 0.05$, * $p < 0.1$

<표 11>은 모범사례 발표에 대응한 재벌기업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2](2011~2016)를 이용하여 식(3)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SR1*, *SR2*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가 동일한데, 변수 *DR*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재벌기업을 나타내는 *CH*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 *CH*와 *DR*의 교호항인 *CH*×*DR*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본1]과 달리 2011년 이후에는 재벌기업들의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 비중이 비재벌기업들보다 낮고, 모범사례가 발표된 이후에는 매출로 분류되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1〉 재벌기업의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분류 변화

변수	SR1	SR2
<i>DR</i>	0.382*** (19.886)	0.230*** (14.508)
<i>CH</i>	-0.152*** (-6.234)	-0.083*** (-4.579)
<i>CH×DR</i>	0.231*** (8.705)	0.146*** (7.106)
<i>SIZE</i>	-0.022*** (-4.505)	-0.021*** (-4.995)
<i>LEV</i>	0.131*** (4.282)	0.010 (0.378)
<i>ROA</i>	0.299*** (4.250)	0.158*** (2.774)
<i>CFO</i>	-0.029 (-0.377)	-0.027 (-0.426)
<i>MB</i>	-0.005 (-1.061)	-0.005 (-1.299)
<i>LRPT</i>	0.202*** (9.937)	0.215*** (11.789)
Industry dummies included		
Year dummies included		
Constant	0.840*** (9.371)	0.617*** (8.068)
Observations	5,839	5,839
Adj R-squared	0.282	0.174

주1) *CH* : 재벌집단에 속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CH×DR* : *CH*와 *DR*의 교호항, 다른 변수의 정의는 <표 9> 참조.

주2) 식 (3)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추정된 계수와 괄호 안에 *t* 통계량(Huber-White's robust *t*-statistics)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 옆의 별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 $p < 0.01$, ** $p < 0.05$, * $p < 0.1$

<표 10>과 <표 11>은 종합적으로 가설 2를 지지하는데, 재벌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여의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보다는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나 언론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회계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만 발표되더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같이 복잡한 규정이 세법에 도입이 되었을 때, 동시에 K-IFRS가 도입되어 계정 분류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규제에 재량성 증가가 발생하였고 기업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유인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의 규제 도입 시에는 회계기준과 공시사항 관련 구체적인 지침도 시차 없이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의 감소 유인이 생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환경의 변화가 특수관계자 수익 분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던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과세대상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 혹은 제외되지 않더라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을 줄여야 하는 유인이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익 발생시 수익을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계환경의 변화는 K-IFRS 도입과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K-IFRS 도입은 이러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사례 발표는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금액만을 대상으로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의 추이를 전체 표본기간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살펴보았을 때, 매출 비중은 2011년과 2012년에 대폭 감소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증가하였다. 이는 단변량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자체의 감소와 증가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특수관계자 매출, 특수관계자 기타수익, 특수관계자 매입, 특수관계자 기타비용의 요소별로 추이를 파악했다.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과 매입은 대폭 감소했고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대폭 증가했다. 반면 모범사례 발표 이후 특수관계자 매출과 매입은 증가하고,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재벌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고, 단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특수관계자와의 수익 발생시 매출 대신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는 빈도가 K-IFRS 도입 이후 증가하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감소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수익의 계정 분류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도 가설에 부합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 중 기타수

익 대비 매출의 비중은 K-IFRS 도입 이후 감소하였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도입과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에 대한 비중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경우 회계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K-IFRS 도입 이후 특수관계자 거래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 비중이 비재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고, 모범사례 발표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다. 재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대상이 될 확률이 비재벌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을 다른 계정으로 분류할 유인이 높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간을 나누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지만, 2011년과 2013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의 매출 분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보고 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매출 분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규제 마련 시 회계환경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회계환경 변화를 겪을 때 특수관계자 매출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거래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때, 총합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이나 기타수익 등 거래요소를 대용치로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거래와 이익조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미 자의적인 이익조정이 수반되어 있어서 내생성의 문제가 클 수 있다. 특히 2011, 2012년의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K-IFRS 도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법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매출이나 영업이익같은 회계 언어에 근거하여 디자인되고 있는데, K-IFRS로 인하여 언어 자체가 달라진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증여의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나, 특수관계자 매출과 관련된 여타규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의 재량적 영역이 넓어진 만큼 규제 대상 거래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의무가 아닌 주식공시 모범사례 발표만으로도 특수관계자 거래 중 기타수익 대비 매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재벌기업의 경우 공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수관계자 매출 분류를 크게 증가시켰다. 지침이 없는 경우를 최대한 이용하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규제가 도입될 때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1. 「‘공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고종권 · 박희진 · 이윤경. 2019. “특수관계자 거래와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44권 제1호 : 71-110.
- 김진태 · 배종일. 2013. “적자회피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3호 : 33-56.
- 김지홍 · 우용상. 200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3호 : 25-59.
- 김영화. 2012.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가치”. 국제회계연구 제44집 : 205-222.
- 김태동 · 이윤아 · 배창현. 2016.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공시수준”. 경영학연구 제45권 제3호 : 761-793.
- 심상규. 2018.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 207-230.
- 유승경 · 김병호. 2020.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수준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의 정확성”. 회계학연구 제45권 제3호 : 215-264.
- 이기세 · 전성일. 2014. “K-IFRS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 191-217.
- 이만우 · 심준용 · 윤용석. 201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 세무학연구 제32권 제2호 : 35-68.
- 이성태 · 최기호 · 윤성만. 2015.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 회계저널 제24권 제5호 : 177-210.
- 최보람. 2012. “재무자료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분석과 개선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6집 : 343-366.
- 최순재 · 권오진 · 김기범. 2014. “특수관계자 거래와 보수적 회계처리간의 관련성 연구”.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 : 65-104.
- 최원욱 · 고윤성 · 조정은. 2011.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9-35.
- 최정호. 2011. “관계회사매출과 이익조정”.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1권 제1호 : 53-81.
- 홍주연 · 박성진. 2014. “국제회계기준도입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공시행태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7집 : 1-19.
- Cheng, Q., and K. Lo. 2006. “Insider Trading and Voluntary Disclos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5) : 815-848.
- Collins, D. W., and S. P. Kothari. 1989. “An Analysis of Intertemporal and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1(2-3) : 143-181.

Kohlbeck, M., and B. W. Mayhew. 2010. "Valuation of Firms that Disclo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9(2) : 115-137.

Lo, A. W., and R. M. Wong. 2011. "An Empirical Study of Voluntary Transfer Pricing Disclosures in Chin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6) : 607-628.

Rogers, J. L., and P. C. Stocken. 2005. "Credibility of Management Forecasts". *The Accounting Review* 80(4) : 1233-1260.

The Effect of Changes in Accounting Environment on Sales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Adoption of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Boyoung Ki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hanges in the arbitrary account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occur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essenc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in 2011, discretion in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disclosure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2011(hereafter, the regulation) were introduced, and in order to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requirements o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more likely to classify revenues as other revenues instead of sales. In 2013, disclosure recommendations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re published, which on the contrary, makes it less likely to classify revenues as other revenues instead of sales.

When examining the trend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from 2001 to 2016, the proportion of sal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1 and 2012 and increased after 2013. Tot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showed a pattern of steadily increasing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with sales and purchases significantly decreasing and other revenues and other expenses increasing significantly after the adoption of IFRS.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disclosure recommendations, sales and purchases increased, and other revenues and other expenses decreased. It shows that the classification behavior of sales of related parties changes with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the case of chaebol companies, they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decreased significantly than non-chaebol compan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and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announcement of disclosure recommendations. Chaebol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bykim0405@kilf.re.kr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so they are more likely to classify sales into other accounts,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taking full advantage of cases where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due to severe monitoring by stakeholders. When making a policy, tax authorities are expected to quickly come up with specific standards and guidelines to respond to th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justification to consider all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preparing regulations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and conducting the research that serves as the basis.

<Key words> Related Party Transactions, Gift Tax, Chaebol, K-IFRS, Disclosure Recommendations